

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의안 번호	관련 1819
----------	------------

제안년월일 : 2020년 12월 17일
제안자 : 보건복지위원장

1. 수정이유

- 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 재정여건 및 사무의 주체 등을 고려하여, 성매매집결지 폐쇄절차에 따른 지원사업의 대상을 “성매매피해자”로 한정함.

2. 수정의 주요 내용

- 성매매집결지 폐쇄절차에 따른 지원사업의 대상을 “성매매피해자 등”에서 “성매매피해자”로 수정함(안 제12조제2항).

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

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.

안 제11조의2의 제목 “성매매피해자등 지원”을 “성매매피해자 지원”으로 하고, 같은 조 제1항 중 “성매매피해자 및 성을 파는 행위를 한 사람(이하“성매매피해자 등”이라 한다)”을 “성매매피해자”로 하며, 같은 조 제2항 중 “성매매피해자 등으로”를 “성매매피해자로”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현행	개정안	수정안
<p>제17조(관련정보의 제공) ① (생략)</p> <p>② <u>서울특별시민은</u></p>	<p><u>업</u></p> <p><u>4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</u></p> <p>② <u>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사업의 대상은 서울특별시 관내 성매매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업소들이 모여 있는 영등포구 영등포동 일대, 성북구 하월곡동 일대, 강동구 천호동 일대 성매매집결지의 성매매피해자 등으로 한하며, 다른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동일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.</u></p> <p>제17조(관련정보의 제공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<u>서울특별시민(이</u></p>	<p>4. (개정안과 같음)</p> <p>② <u>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사업의 대상은 서울특별시 관내 성매매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업소들이 모여 있는 영등포구 영등포동 일대, 성북구 하월곡동 일대, 강동구 천호동 일대 성매매집결지의 성매매피해자로 한하며, 다른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동일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.</u></p> <p>제17조(관련정보의 제공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(개정안과 같음)</p>

현행	개정안	수정안
<p>필요할 경우 여성폭력 예방·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「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」에 근거하여 청구할 수 있다.</p>	<p><u>하 “시민”이라 한다)</u> <u>은 -----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</p>	

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 여성폭력방지와 피해자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11조의2(성매매피해자 지원) ① 시장은 「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성매매피해자의 인권 보호와 자립·자활을 지원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.

1. 생계유지 등을 위한 생활안정 지원사업
2. 주거지 마련을 위한 주거이전 지원사업
3. 사회복귀 등을 위한 직업훈련 지원사업
4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원사업

②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사업의 대상은 서울특별시 관내 성매매를 목적으로 운영되는 업소들이 모여 있는 영등포구 영등포동 일대, 성북구 하월곡동 일대, 강동구 천호동 일대 성매매집결지의 성매매피해자로 한 하며, 다른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동일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

하지 아니한다.

제17조제2항 중 “서울특별시민”을 “서울특별시민(이하 “시민”이라 한다)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<u><신 설></u></p>	<p><u>제11조의2(성매매피해자 지원) ①</u> <u>시장은 「성매매알선 등 행위의</u> <u>처벌에 관한 법률」 제2조 제1항</u> <u>제4호에 따른 성매매피해자의</u> <u>인권 보호와 자립·자활을 지원</u> <u>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</u> <u>다음 각 호의 지원사업을 추진</u> <u>할 수 있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u>1. 생계유지 등을 위한 생활안</u> <u>정 지원사업</u> <u>2. 주거지 마련을 위한 주거이</u> <u>전 지원사업</u> <u>3. 사회복귀 등을 위한 직업훈</u> <u>련 지원사업</u> <u>4.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</u> <u>인정하는 지원사업</u> <p><u>② 제1항 제1호부터 제3호까지</u> <u>에 따른 사업의 대상은 서울특</u> <u>별시 관내 성매매를 목적으로</u> <u>운영되는 업소들이 모여 있는</u> <u>영등포구 영등포동 일대, 성북</u> <u>구 하월곡동 일대, 강동구 천호</u> <u>동 일대 성매매집결지의 성매매</u></p>

현행	개정안
<p>제17조(관련정보의 제공) ① (생략)</p> <p>② <u>서울특별시민</u>은 필요할 경우 여성폭력 예방·방지 및 피해자 보호와 관련된 정보를 「서울특별시 열린시정을 위한 행정정보 공개 조례」에 근거하여 청구할 수 있다.</p>	<p><u>피해자로 한하며, 다른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동일한 지원을 받고 있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아니한다.</u></p> <p>제17조(관련정보의 제공) ① (현행과 같음)</p> <p>② <u>서울특별시민(이하 “시민”이라 한다)</u>----- ----- ----- -----.</p>